

特許法(法令 第92號)

(改正 檀紀 4285年 4月 13日)
法律 第238號

이 資料는 古本과 舊官報에서 複製하여 原形대로 掲載하므로 페이지의 順序가 거꾸로 되었음
을 밝히면서 錯誤없기 바랍.

茲遇에는 各裁判所의 書記는 其提起日로부터 左記事
項을 通知함을 要함

一、訴訟關係者의 住所姓名

二、特許權者의 姓名及其特許權

第三者가 當事者 또는 參加人으로서 訴訟에 參加된時 또는 新特許가 其訴訟의 原因으로서 追加된時는 裁判所 書記는 特許局長에게 其에 關하여 通知함을 要함

裁判所書記는 決定 또는 判決이 있는 三十日 以內에 其에 關하여 特許局長에게 通知함을 要함

第二百二十九條 前條에 依한 通知를 受할 時는 特許局長은 其 通知를 登錄하며 其 訴訟中인 各特許에 關한 書類의 一部로 其 通知를 編綴함을 要함

第二百三十條 特許에 關한 裁判에 있어서 一部請求權 廢棄無效 또는 其 判決이 確定된 後에 特許權者가 相當 期間內에 第二百二十七條에 依한 特許權의 一部 抽棄權을 提出하지 않았을 때는 裁判所는 其 特許全部를 無效로 看做함

第二百三十一條 本章의 規定은 其 特許權者 또는 其에 依한 權利者 또는 司法에 規定된 救濟方法을 窮盡하기 나 또는 裁判所 또는 民事訴訟에 規定한 權限及 裁判 權을 剝奪하는 것이 아님

第十五章 罰 則

第二百三十二條 詐欺 또는 特許、審判、抗告 審判 또는 特許에 關하여 審決 또는 判決을 受한 者 또는 特許無效 特許取消 또는 強制實施權을 取得한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 또는 二十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第二百三十三條 左記各款에 該當한 者는 發明特許 또는 植物特許에 있어서 三年 以下의 懲役 또는 十萬圓 以下의 罰金、實用特許 또는 美匠特許에 있어서 一年 以下의 懲役 또는 五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一、特許되지 않는 植物 또는 物品 또는 特許權에 表

示한 特許를 適用하지 않는 植物 또는 物品에 關하여 其 植物、物品 또는 其 容器 包裝類에 特許標識을 附하거나 또는 特許標識과 相似한 表示을 한 者

二、植物 또는 物品이 特許되지 않는 것을 既知하며 또는 特許標識에 表示한 特許를 適用하지 않는 植物 또는 物品인 것을 既知하면서 其 植物、物品 또는 其 容器 包裝類에 特許標識 또는 特許標識과 相似한 表示을 附한 植物 또는 物品을 販賣하거나 또는 販賣하기 爲하에 提供한 者

三、特許되지 않는 植物 또는 物品 또는 特許권方法 또는 生産한 것이 實인 生産品 또는 特許標識에 表示한 特許를 適用하지 않는 植物、物品及 方法에 關하여 其 植物、物品 또는 其 方法에 依한 生産品을 製作、使用販賣 또는 擴布하기 爲하여 廣告、看板、引札의 類에 其 植物 또는 物品이 特許되었다고 또는 其 生産品이 特許권方法으로 製作되었다고 表示하거나 또는 其 表示과 相似한 表示을 한 者

四、特許되지 않는 方法 또는 特許標識에 表示한 特許가 其 方法에 適用하지 않는 時에 其 方法을 使用하기 爲하에 廣告看板引札의 類에 其 方法이 特許되었다고 表示하거나 또는 其 表示과 相似한 表示을 한 者

前項의 犯罪은 利害關係人 또는 官公吏를 除한 一般國民의 告發에 依하여 此를 論함 但 一般國民의 告發에 依한 後에 是의 罰金은 一告訴마다 金十圓 以上이 어야 함 罰金의 半額은 告發者에 歸하고 殘半額은 政府에 歸함

第二百三十四條 第二百十八條 規定은 前條에 此를 準用함

第二百三十五條 法에 依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事가 特許局 또는 其 副官에 對하여 裁判所 또는 官廳에 對하여 虛偽의 陳述을 한 後에 發明者、考案者、出願者、法定代理人 또는 特許權者가 第四十五條、第四十六條及 第八十九條 規定에 依하여 爲 罪를 處함

계 소 기

第二百十八條

第三者가左記의一에該當한特許品에關하여第二百十五條及第二百十六條에規定한特許權限의範圍를特許의範圍를不知하고特許權侵害者는損害賠償의責任이있다

一、特許權者는特許權者가許諾한實施者、地域的權利者或은屬受에依하여附與된權利實施者가使用販賣 또는 擴布한物品

二、左記의一에該當한者가使用、販賣 또는 擴布한物品으로特許權者가其事實을知悉하는範圍

(一) 法에依하여發生한實施權에依하여實施하는者

(二) 第九十七條第三項及第四項 또는 第二百一十條에依하여實施하는者

(三) 地域的權利者가許諾한實施權에依하여實施하는者

(四) 特許權侵害者가特許權者가訴訟을提起한者

第二百十九條

第二百十五條乃至第二百十八條의規定한特許權植物及分離하여販賣擴布하는特許權發明、考案의部分品에此는適用함

第二百十七條及第二百十八條의規定한地域的權利者로서他人의實施權은地域的權利者를專斷權、其地域的權利에依하여他人의權利를行使하는權限、地域的權利者가侵害訴訟에原告인權限에適用함

第二百二十條

特許權者가附從後에第三者가第二百十八條의侵害行爲를受權限에는損害賠償의責任이有함 但該侵害者는其特許權者가附從前에製作한植物은正當한特許權限을附從前에此는使用、販賣、擴布한權利가有함

第二百二十一條

特許權者에對한訴訟은特許權侵害者는土地는侵害者의居住地域及其營業所在地는管轄

하는地方法院에此는提起할수있음

前項의管轄地方法院에侵害者의發生地如何에不拘하고特許權侵害에關한은事件을判決할수있음

第二百二十二條

特許權者는特許權者、特許權에依한權利者에對하여侵害者로서因하여、侵害者가受한利益以外特許權者 또는 其에因한權利者가受한全損害에對하여責任이有함

別段의規定이無한限特許權者는損害賠償의訴訟의當事者임을要함 但本條는地域的權利의範圍에其侵害가特許地域內에서發生할時는適用치않음 其範圍에는地域的權利者는其損害賠償의訴訟의當事者임을要함

第二百二十三條

特許權者에對한訴訟에있어서原告 또는被告의請求에依하여裁判所는左記事項에關하여適當한命令을發할수있음

一、相對方에對하여特許目的의物에使用、製作、販賣 또는 擴布의制限 또는 禁止、其命令에不服從하는權限에對하여罰金事項

二、調査 또는 會計에關한事項

三、一般訴訟手續에關한事項

第二百二十四條

利益에關하여는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는販賣에對하여안立證을要하여侵害者는主張하는 또는費用의內容을立證을要함

第二百二十五條

證據에依하여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가侵害者로因하여損害를受하였으므로其者는正當한利益을侵害者가取得한것이明白한範圍에其損害 또는 利益을確定하지못함에는裁判所는任意로其損害及利益에關하여鑑定을命할수있음 裁判所는鑑定其他證據에依하여侵害者에對하여侵害者로因하여受한利益과通常의損害에相當하는額을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에게支拂하

第二百二十六條

裁判所는侵害者에對하여實際에生한利益及損害 또는 前條에依한利益及損害額의代身으로適當하다고認定되는損害額의支拂을命할수있음

第二百二十七條

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의請求에依하여裁判所는侵害者가取得하는所有한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에게交付하도록命할수있음 其範圍에는第二百二十二條乃至第二百二十六條에依하여利益及損害의總額에서交付된物品의價格을差引할수있음

二百二十六條

裁判所는侵害者에對하여實際에生한利益及損害 또는 前條에依한利益及損害額의代身으로適當하다고認定되는損害額의支拂을命할수있음

第二百二十七條

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의請求에依하여裁判所는侵害者가取得하는所有한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에게交付하도록命할수있음 其範圍에는第二百二十二條乃至第二百二十六條에依하여利益及損害의總額에서交付된物品의價格을差引할수있음

第二百二十八條

侵害者에對한訴訟은特許權者가提起한

前二項에依하여對한損害賠償額은利回가없이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는此로因하여法으로規定된其他救濟方法을排除하지않음

第二百二十九條

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의請求에依하여裁判所는侵害者가取得하는所有한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에게交付하도록命할수있음 其範圍에는第二百二十二條乃至第二百二十六條에依하여利益及損害의總額에서交付된物品의價格을差引할수있음

第二百三十條

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의請求에依하여裁判所는侵害者가取得하는所有한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에게交付하도록命할수있음 其範圍에는第二百二十二條乃至第二百二十六條에依하여利益及損害의總額에서交付된物品의價格을差引할수있음

第二百三十一條

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의請求에依하여裁判所는侵害者가取得하는所有한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에게交付하도록命할수있음 其範圍에는第二百二十二條乃至第二百二十六條에依하여利益及損害의總額에서交付된物品의價格을差引할수있음

第二百三十二條

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의請求에依하여裁判所는侵害者가取得하는所有한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에게交付하도록命할수있음 其範圍에는第二百二十二條乃至第二百二十六條에依하여利益及損害의總額에서交付된物品의價格을差引할수있음

第二百三十三條

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의請求에依하여裁判所는侵害者가取得하는所有한特許權者 또는 其에依한權利者에게交付하도록命할수있음 其範圍에는第二百二十二條乃至第二百二十六條에依하여利益及損害의總額에서交付된物品의價格을差引할수있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大法院의 判決이 있거나 審決 또는 査定의 破毀의 理由
는 其事件에 關하여 特許局을 竊束함

第二百四條 抗告審判의 抗告審判所 또는 抗告審判長
의 決定에 對한 抗告을 大法院에 하여야 함

第二百五條 第八條規定에 依한 補償金額에 關한 通知, 決定 또는 審決에 不服한 者는 其通知 또는 決定 또는 審決을 受한 日로부터 四十日 以內에 管轄 地方 法院에 出訴할 수 있음 第八十一條 第二項 規定은 前項의 出訴에 適用함

第二百三條 規定에 依하여 局長이 決定한 補償金額에 不
服한 者는 第六條 規定에 依하여 出訴할 수 있음

第十三章 再 審

第二百六條 左記 審判, 抗告審判 또는 大法院에 對한
出訴에 關하여 行한 確定 審決 또는 判決에 對하여서는 再審을 請求할 수 없음

一、特許의 效力, 實施權의 取得 또는 第二百二十三條
의 訂正許可에 關한 審判

二、前號 審判의 審決에 對한 抗告審判

三、前號 抗告審判의 審決에 對한 大法院에 出訴, 民
事訴訟法 第四百二十條 規定은 再審 請求에 關하여
此을 準用함

第二百七條 再審은 當事者가 不服의 理由를 示한 日부
로부터 十日 以內에 限하여 此을 請求할 수 있음

審決이 確定 또는 大法院의 判決前에 當事者가 不服의
理由를 示한 日은 前項에 規定한 期間은 審決 確定 또는
大法院의 判決이 있는 日의 翌日부로부터 此을 起算함

審判, 抗告審判 또는 出訴에 있어서 當事者가 代理인
자였거나 理由를 再審을 請求할 때는 第一項에 規定한
期間은 當事者 또는 其代理人의 審決 또는 判決을 受한
日의 翌日부로부터 此을 起算함

再審의 請求는 審決이 確定 또는 判決이 있는 日부
로부터 三
年 以內에 限하여 할 수 있음

再審의 理由가 審決 確定 또는 判決이 있는 日以後에 發
生한 時는 前項에 規定한 期間은 其理由가 發生한 日의
翌日부로부터 此을 起算함

本條 第一項及 第四項의 規定은 審決 또는 判決이 前
에 已로 確定 審決 또는 判決에 抵觸한 다는 것은 理由로 得
再審의 請求에 是 此을 適用하지 않음

第二百八條 審判, 抗告審判 또는 出訴에 對하여서는 再
審의 請求及其後의 手續에 對하여는 本章에 別段의 規定
이 없는 限에 各其審判의 手續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二百九條 民事訴訟法 第四百二十一條, 第四百二
十二條及 第四百二十六條乃至 第四百二十八條의 規
定은 審判 抗告審判 또는 出訴에 對하여는 再審에 此을 準
用함

第二百十條 左記 境遇에 있어서 是 特許權의 範圍은 審
決 確定 또는 判決이 있는 後 善意로 輸入 또는 國內에서
製作한 物件에 是 限이 지 않음

一、無效 또는 特許權이 再審에 依하여 回復된 時
二、特許權의 範圍에 屬하지 않는 다는 審決이 確定된
日 또는 判決이 있는 後 再審에 依하여 此과 反對인
審決이 確定된 日 또는 判決이 있는 時

第二百十一條 前條 各號의 一에 該當한 境遇에 있어서
審決이 確定하거나 또는 判決이 있는 後 再審의 請求前
善意로 國內에서 其發明, 考案의 事業을 하거나 또는 同
事業設備을 有한 者는 其特許發明에 關하여 其事業은
是 設備範圍內에서 實施權이 有함

第九十九條 第三項 規定은 前項에 依하여 發生하는 實
施權에 此을 準用함

第二百十二條 實施權取得의 審決이 確定하거나 또는
判決이 있는 後 再審의 請求前 善意로 國內에서 其發明
考案의 事業을 하거나 또는 其事業設備을 有한 者는 其
特許發明에 關하여 原實施權의 範圍內에서 實施權이
有함

第九十九條 第三項 規定은 前項에 依하여 發生한 實施
權에 此을 準用함

第二百十三條 第三者가 當事者의 共謀에 依하여 其第
三者의 權利 또는 利益을 詐害한 目的으로 審決 또는
判決을 하게 하였다 는 理由의 不服申立에 關해서는 再
審의 規定을 準用함

第二百十四條 本章의 規定은 審判所, 抗告審判所 또는
大法院이 其固有의 規定에 依하여 審決 또는 判決을
訂正 또는 再審하는 時에 是 何等影響을 받지 않음

第十四章 特許權의 實施

第二百十五條 特許權者는 使用, 販賣 또는 賃借 特
許品에 特許標識을 附할 수 있음

特許品의 性質上 其物品에 特許標識을 附할 수 없는 環
境에 是 其物品自體 또는 包裝에 特許標識과 同은 貼札
을 附할 수 있음

特許品의 性質上 其自體 또는 包裝에 特許標識을 附할
수 없는 境遇에 是 特許權者는 自己가 發行하는 說明書
또는 廣告書에 其標識을 記載할 수 있음

第二百十六條 特許標識에 是 其特許의 種類을 表示하
기爲하여 漢字 또는 國文으로 「發明特許」, 「植物特
許」, 「實用特許」, 「美匠特許」 또는 文字를 쓰고 「아
미야」, 「數字」 또는 其特許標識을 記載할 수 있음 極小
한 物品에 是 略式으로 最初의 漢字를 記入하여 特許의
種類을 表示하고 特許標識을 記載할 수 있음 但 本項
의 境遇의 包裝에 是 第二百十五條 第二項 規定에 依하
여 完全히 特許標識을 附할 수 있음

第二百十七條 特許權者는 (法에 依하여 發生하는 實
施權을 包含함) 實施權者, 第九十七條 第三項, 第四
項及 第二百十條에 依하여 權利를 行使하는 者及 地域
의 權利者에 對하여 第二百十五條에 規定한 特許品에 特
許標識을 附할 수 있음